

|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
|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20년 08월 20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년 12월 10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개시일 : 2020년 09월 24일]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 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가 지급될 경우 환매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계산에 사용되는 절대수익률은 수익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연 환산 수익률이 아닌 투자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성과보수 산정 시 절대 수익률은 이 집합투자기구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절대수익률로 적용됩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 산정시 절대수익률을 0%로 지정하였으며, 성과보수를 투자자가 지급하는 구조이오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환매 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전부 환매만 가능하므로 투자 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 요약정보 > (작성기준일 : 2020.08.20.)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DA990)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함으로 **주식가격변동위험, 국가 위험, 환율 변동위험, 운용실적 연동에 따른 성과보수 부과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보고서는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①글로벌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Hi-tech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③새로운 시대흐름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분류하여 투자대상을 구성하고 개별 기업의 모멘텀, 산업성장성, 밸류에이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④다만, 트렌드 변화와 사회구조적 흐름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및 유형 분류는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또한 시의 적절하게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비용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종류 (Class)</th> <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 보수</th> <th>판매 보수</th> <th>동종유형 총보수</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 온라인(A-e)</td> <td>납입금액의 0.1</td> <td>0.085</td> <td>0.03</td> <td>1.39</td> <td>20</td> <td>30</td> <td>41</td> <td>64</td> <td>133</td> </tr> <tr> <td>수수료미징 구-온라인 (C-e)</td> <td>없음</td> <td>0.105</td> <td>0.05</td> <td>1.69</td> <td>11</td> <td>24</td> <td>37</td> <td>65</td> <td>147</td> </tr> </tbody> </table> | 종류 (Class)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1 | 0.085 | 0.03 | 1.39 | 20 | 30 | 41 | 64 | 133 |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C-e) | 없음 | 0.105 | 0.05 | 1.69 | 11 | 24 | 37 | 65 | 147 |
| | 종류 (Class) |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1 | 0.085 | 0.03 | 1.39 | 20 | 30 | 41 | 64 | 1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C-e) | 없음 | 0.105 | 0.05 | 1.69 | 11 | 24 | 37 | 65 | 1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e형과 Ce형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5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해당 목차 및 페이지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은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환매시에 환매금액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 환매 기준가 적용일에 계좌별 '투자금액 X (1+0%)'를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10%의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환매대금지급일에 환매금액에서 차감
 ※ 당사는 절대수익률을 0%로 지정하였으며, 성과보수를 투자자가 지급하는 구조이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과보수금액 :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10%)
 ② 초과수익금액 : Max { [환매금액 - (투자원금 X (1+절대수익률(0%))], 0 }
 ③ 절대수익률 : 0%
 ④ 성과보수율 : 10%
 ⑤ 성과보수 한도 : 투자원금 X 5%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해당사항없음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 | | | 운용경력 년수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집합 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 고재호 | 1978 | 책임 (본부장) | 7 | 1,030 | 10.29 | 0.0 | 10.29 | -4.67 | 9.8 | 한화투자 증권 (13개월) 아데나 컨설팅 (22개월) 아데나 투자자문 (39개월) 유리자산 운용 (18개월) 칸서스 자산운용 (26개월) |
| 김명선 | 1992 | 부책임 (대리) | 1 | 20 | - | - | 10.29 | -4.67 | 4.8 | 써미트 투자자문 (14개월) 한가람 투자자문 (23개월) *메리츠 종 금증권 (13개월) 하나금융 투자 (7개월) 칸서스 자산운용 (5개월) |

| | | |
|---------|--|--|
| 투자자유지사항 |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을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가 지급될 경우 환매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요투자위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원금손실위험 |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해외투자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집합투자기구는 소수 종목 혹은 특정 지역(국가) 및 일부 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 주식투자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의 고유위험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 환율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통화로 운용하기 때문에 해당통화의 가치변동으 |

| | | |
|----------|--|---|
| 변동 위험 | <p>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헤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환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결제위험 포함) 해 질 수 있습니다.</p> <p>(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p> <p>(2)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3) 목표 헤지 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해서 90%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4)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상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 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 |
| | <p>장외 파생상품 거래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단,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장외파생상품에 속합니다. 표준화된 장내시장에 비해 장외시장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시장에서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으므로 계약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p> | |
| | <p>성과보수 부과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수 적용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p> | |
| | <p>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p> <p>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
| 매입방법 | 환매방법 | <p>- 17시 이전: 매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를 적용</p> <p>- 17시 경과 후: 매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기준가를 적용</p> |
| 환매수수료 | 환매방법 | <p>- 환매 수수료 없음</p>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기준가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 |

| | | | |
|------------|---|--|---|
| | | 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 없음 | | |
| 집합투자업자 | 칸서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077-5000/ 인터넷 홈페이지:www.consus.co.kr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가능 | 모집, 매출 총액 | 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20.12.10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수수료 미징구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 | 온라인슈퍼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펀드 등(1)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 (DA990) | |
|-----|------------------------------------|----------------|
| No. | 종류(Class)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1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DA991 |
| 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DA992 |
| 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I) | DA993 |
| 4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DA994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판매)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모집(판매) 합니다. [모집개시일:2020.09.24] |
|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등 영업점 |
|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주식) (DA990) | |
|-----|------------------------------------|----------------|
| No. | 종류(Class)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1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DA991 |
| 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DA992 |
| 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I) | DA993 |
| 4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DA994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자 | 내용 |
|---------------|------------|
| 2020. 09. 24. | 최초 설정 |
| 2020. 12. 10 | 투자설명서 오기정정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 ☎ 02-2077-5000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에는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
- ② 투자자문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자산군 및 비중 등 제공
 -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 전망에 관한 조언
 -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의 제공
- ③ 이 투자신탁은 현재(2020년 9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
|-------|---|
| 회 사 명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 설립일 | 1999년 12월 15일 |
| 매출액 | 1조 883억 |
| 사업개요 |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서비스 제공 하도록 승인을 받은 회사로서 빅데이터 분석, 최적의 자산군 선정, 상관관계분석, 포지션 선정, 성과분석, 리스크 관리의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에게 투자 솔루션을 제공 |
| 홈페이지 | www.ebestsec.co.kr |

5. 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 | | | 운용경력수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 고재호 | 1978 | 책임(본부장) | 7 | 1,030 | 10.29 | 0.0 | 10.29 | -4.67 | 9.8 | *한화투자증권 방배지점(13개월) |
| | | | | | | | | | | *아데나컨설팅 자산운용팀(22개월) |
| | | | | | | | | | | *아데나투자자문 자산운용팀(39개월) |
| | | | | | | | | | |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18개월) |
| | | | | | | | | |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6개월) |
| 김명선 | 1992 | 부책임(대리) | 1 | 20 | - | - | 10.29 | -4.67 | 4.8 | *써미트투자자문 주식운용팀(14개월) |
| | | | | | | | | | | *한가람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23개월) |
| | | | | | | | | | | *메리츠증권증권 트레이딩본부EPT팀(13개월) |
| | | | | | | | | | | *하나금융투자 시실(7개월) |
| | | | | | | | | |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5개월)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성명 | 집합투자기구수(개) | 운용규모(억원) |
|-----|------------|----------|
| 고재호 | 1 | 3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환매수수 료 부과여부 |
|----------------|---|---------------|-------------------|
| 1. 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 가입자 | 있음 | 없음 |
|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 3. 종류 I 수익증권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납입금액이 10억 이상인 자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 4.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있음 | 없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조지수 : MSCI AC World Index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① | 주식 | 60% 이상 | 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
| ② |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
| ③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 ④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
| ⑤ | 집합투자증권 등 | 자산총액의 40%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법 |

| | | | |
|---|---------|--------------------------|--|
| | | |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
| ⑥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⑦ | 금리스왑거래 | 보유증권 총액의 100% 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
| ⑧ | 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
| ⑨ | 증권의 대여 |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총액 |
| ⑩ | 증권의 차입 | 자산총액의 20%이하 |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④호부터 제⑤호까지의 규정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④호부터 제⑤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⑥호부터 제⑩호까지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 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주식 및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주식 및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국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Hi-tech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내의 성장주 투자

-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의미합니다.
-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선진국은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 설계, 연구개발, 마케팅 등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으며,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신흥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조립, 중간재부품조달 등의 직무를 맡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글로벌 밸류체인을 분석하여 고부가가치 영역을 영위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업 중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 확장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

<MSCI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주식으로 구성된 지수>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관리전략

환율 헤지 전략

- ☑ 외화 노출액(환 Exposure) 의 약 90%수준 헤지 추구
- ☑ 외화 노출액(환 Exposure)에 대한 환헤지 전략 수행하여 환율 리스크 관리
- ☑ 환율 하락에 따라 펀드의 평가 손실 가능성 존재



칸서스ONE-WORLD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

- 외화 노출액 (Exposure)은 전체 자산의 약 60%수준이며, 통화선물 등을 통한 환헤지 전략 수행
- 환헤지 전략 수행 시 선물 증거금 등에 따라 일부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종목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주식 투자 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

| | |
|------------|--|
| |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금리 변동 위험 |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 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율 변동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통화로 운용하기 때문에 해당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헤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환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결제위험 포함) 해 질 수 있습니다. (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2)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해서 9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 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원금 손실 위험 |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거래 상대방 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주요내용 |
|--------------------|---|
| 국가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해외 투자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집합투자기구는 소수 종목 혹은 특정 지역(국가) 및 일부 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해외 투자 위험 (자금송환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식예탁 증서(DR) 투자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본래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적극적 매매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성과보수 부과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수 적용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해외납세의무자 관련위험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산정 오류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 유동성위험 및 상환연기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만기 시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자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없거나 상환되지 못하면 집합투자증권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정기예금 및 RP 매입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 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자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규모변동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잠재적 이해상충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 |

| | |
|-------------|--|
| | <p>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p> <p>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p> |
|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 <p>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당사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등이 될 수 있습니다.</p> |
| 환매 연기 위험 | <p>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칸서스자산운용(주)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3년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는 칸서스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 위험 등급 | 분류 기준 | 상세설명 ^{주1)} |
|-------|---------|--|
| 1등급 | 매우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Act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주2)}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Pass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주2)}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주2)}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주3)}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BBB-/A3 등급편입 가능한 채권형펀드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5)}부동산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사업시행목적을 위한 회사 지분증권 투자 및 담보물이 충분치 않은 대여투자, 단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에서 판단함. |
| 5등급 | 낮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주4)}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A-/A2- 이상 등급편입 가능한 채권형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5)}부동산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사업시행목적을 위한 회사에 충분한 담보(투자금액의 100% 이상)가 존재하는 대여투자, 단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에서 판단함. |
| 6등급 | 매우 낮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주1)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2) 고위험자산 : 주식,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REITs, Commodity, 파생상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주3)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주4)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주5)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주된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투자구조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헷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 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8)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 주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0) 파생상품의 편입비는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11)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 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2)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특정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수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3)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주15)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재산정합니다.

※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한 매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구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
| 1. 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 가입자 |
|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 가입자 |
| 3. 종류 I 수익증권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납입금액이 10억 이상인 자 |
| 4.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환매청구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나)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 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 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일정한 날의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인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

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 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 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이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매일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 시 |
| 공시장소 |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투자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
|-------------------------|--|
| ③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④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⑤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⑦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 (Class)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수수료 선취-온라인(A-e) |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0.1%이내 | 없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수수료 미징구 - 온라인(C-e) |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없음 | 없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I)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납입금액이 10억 이상인 자 | 없음 | 없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수수료 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없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 및 지급합니다.

- ①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 성과에 대하여 ②에 따라 계산되며 ③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인출시점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합니다.
 -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성과보수계산기간 : 수익자의 당해 수익증권 매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부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 가. 초과수익금액 : $\text{Max} \{ [\text{환매금액} - (\text{투자원금} \times (1 + \text{절대수익률}(0\%))], 0 \}$
 - * 환매금액 : 환매좌수 X 1좌당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세후 이익분배금
 - 단, 세후 이익분배금은 환매기준가 적용일이 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약관 제32조 1항 단서에 따라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 투자원금 : 투자자의 납입원금(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금액)
 - * 절대수익률 : 0%
 - 나. 성과보수금액 :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10%)
 - 3. 성과보수한도 : 투자원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투자원금 X 5%)
 - ③ 집합투자업자는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에서 정한 날에 취득합니다. 단, 소규모 투자신탁의 임의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1. 투자신탁의 전부환매 : 환매대금 지급일에 환매금액으로부터 취득
 - 2. 투자신탁 해지일(청산일) : 상환금 지급일에 상환금으로부터 취득
- ※ 당사는 절대수익률을 0%로 지정하였으며, 성과보수를 투자자가 지급하는 구조이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로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문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회사 간 별도계약서에 따릅니다.
- ※ 이 투자신탁은 투자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 (Class)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 판매 회사 보수 | 신탁 업자 보수 | 일반 관리 회사 보수 | 총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기타 비용 | 총보수 비용 | 합성 총보수 비용 | 증권 거래 비용 |
| 수수료선 취-온라 인(A-e) | 0.00 | 0.03 | 0.04 | 0.015 | 0.085 | 1.39 | 0.01 | 0.096 | 0.096 | 0.01 |
| 수수료미 징구-온 라인(C-e) | 0.00 | 0.05 | 0.04 | 0.015 | 0.105 | 1.69 | 0.01 | 0.115 | 0.115 | 0.01 |
| 수수료미 징구-오 프라인-펀 드 등 (I) | 0.00 | 0.05 | 0.04 | 0.015 | 0.105 | - | 0.01 | 0.115 | 0.115 | 0.01 |
| 수수료후 취-온라인 슈퍼(S) | 0.00 | 0.025 | 0.04 | 0.015 | 0.08 | - | 0.01 | 0.09 | 0.09 | 0.01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 매1개월 후급 | | | | | - | 사유 발생시 | - | - | 사유 발생시 |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성과보수 펀드로 별도의 집합투자업자 보수는 없습니다.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기타비용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등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6) 성과보수는 전부 환매시,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사유발생 시 지급)
- 주7) 이 투자신탁은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환매시에 환매금액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운용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아래 예시는 10년 이상 종류별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로 환매청구 시에 적용되는 성과보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 투자기간 | | | | |
|-------------------|------------------|------|-----|-----|-----|------|
| | | 1년후 | 2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0 | 30 | 41 | 64 | 13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20 | 30 | 41 | 64 | 13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 | 24 | 37 | 65 | 14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 | 24 | 37 | 65 | 14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 | 24 | 37 | 65 | 14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 | 24 | 37 | 65 | 147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4 | 34 | 44 | 51 | 116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24 | 34 | 44 | 51 | 116 |

-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0.1%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익증권의 경우 3년 미만 환매시 0.15%의 후취판매수수료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성과보수 금액 예시(종류Ce수익증권 기준)>

| | | | | | | | | |
|----------|-------------|--------|--------|--------|--------|--------|--------|--------|
| 투자금액 | 10,000,000원 | | | | | | | |
| 설정기준가 | 1,000원 | | | | | | | |
| 설정좌수 | 10,000,000좌 | | | | | | | |
| 환매기준가격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300원 | 1,400원 | 1,500원 | 1,700원 | 2,000원 |
| 성과보수(천원) | - | 100 | 200 | 300 | 400 | 500 | 500 | 500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보수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주2) 성과보수 한도인 [투자원금 x 5%]에 대하여 반영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주3) 이익금이 모두 유보되어 분배를 유보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4) 상기의 성과보수는 투자기간과 무관하게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환매시에 환매금액에서 지급됩니다.
- 주5) 선취 ·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상기의 성과보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해외 투자자산의 안전한 보관 등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자산보관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사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성과보수 수취펀드 유의사항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결산 시 분배대상 이익금을 재투자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

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

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함

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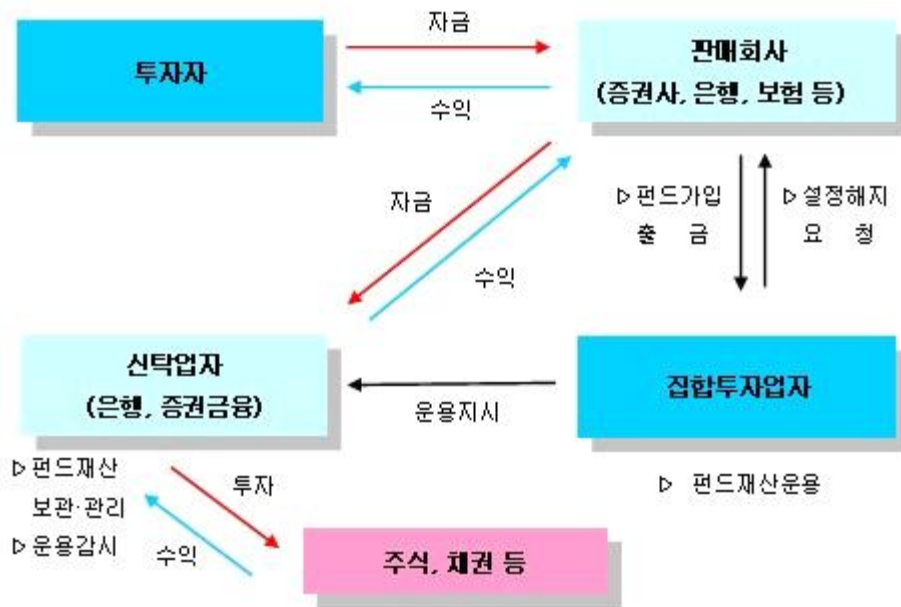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
| 회사 연혁 | 2004.05.10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2004.09.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4.10.13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형펀드 출시 2005.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5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 수상 2006.01.30 한경Business 선정, 2005년 주식형 Best 운용회사 2007.01.31 2007 대한민국 펀드대상 운용사 부문(주식형 펀드운용) 2007.08.02 대한민국 최초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 2007.09.2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Active주식형부문) 2008.06.27 대한민국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 2009.02.04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2009.12.14 국제투자 성과기준(GIPS) 인증 2010.03.12 KDB Consus Value PEF 설립 2010.12.14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메디슨 등" 삼성전자에 매각 2011.08.25 한국증권금융 위탁운용사 선정 (주식형) 2012.01.27 2011 더벨 주관 'BEST M&A Seller/PE부문' 수상 2013.12.24 수탁고 4조 돌파/ 연기금풀 개별운용사 선정(액티브주식형) |

| | |
|------|---|
| | 2015.10.27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5.11.24 AI사업부문 인프라운용본부 약정액 3조 돌파 2016.09.13 칸서스 튠튼채권탄탄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 2000억 돌파 2017.02.28 공모형 노을연료전지특별자산신탁1호 설정 2018.01.19.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문사모특별자산1,2,3호 설정(약정액 4,780억) 2018.03.26. 한화생명 특별계정(주식형) 일임 및 NH농협생명 위탁운용사 선정 2018.04.27. 운정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자 선정 |
| 자본금 | 121.9억 |
| 주주현황 | HMG D&C(주), NH투자증권, 군인공제회, KDB생명, 보성산업 미래에셋대우(주), 하나금융투자(주), 우리사주조합, 기타 |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6(당) 기말 2019년04월01일~ 2020년03월31일 | 제 15(전) 기말 2018년04월01일~ 2019년03월31일 |
|-------------------|---|---|
| 자산 | | |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271 | 730 |
| 예치금 | 606 | 1,1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965 | 5,6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4 | 590 |
| 관계기업투자 | 432 | 1,545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여금 및 수취채권 | 399 | | 1,209 | |
| 유형자산 | 1,483 | | 457 | |
| 무형자산 | 412 | | 485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3,579 | | 3,916 | |
| 기타자산 | 230 | | 203 | |
| 자산총계 | | 15,926 | | 15,951 |
| 부채 | | | | |
| 예수부채 | 283 | | 283 | |
| 기타금융부채 | 1,128 | | 539 | |
| 기타부채 | 2,313 | | 10,146 | |
| 부채총계 | | 3,442 | | 10,686 |
| 자본 | | | | |
| 자본금 | 12,195 | | 24,701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719) | | (679) | |
|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1,007 | | (18,757) | |
| 자본총계 | | 12,483 | | 5,264 |
| 부채 및 자본총계 | | 15,926 | | 15,951 |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2020.08.20/단위:억원)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 | | | | | | | 사모 투자 전문 회사 (PEF) | 투자 일임 | 총계 |
|----------|--------|-------|-------|-----|----------|-------|----------|----------|----------|-------------------------------|----------|--------|
| | 증권 | | | | | 부동산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단기 금융 | |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 | 파생 상품 | | | | | | | |
| 운용 자산 | 447 | 1,244 | 5,094 | 4 | 44 | 2,102 | 25,857 | 1,473 | 0 | 13,448 | 0 | 49,712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신한은행 ☎ 02-1577-800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shinhan.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행위 또는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 ①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우리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3층 ☎ 02-3151-350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woorifs.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KIS채권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02-782-10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5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kr | www.nicepni.co.kr | www.bond.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 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 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5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1)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 에 해당 집합 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 가 그 수익자총 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 증권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투자자문회사를 면책합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 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

- 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분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 | | | | | |
|---------------------|---|--------------|------------|---------------|-----------|------------|------------------|-----------|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 | | | | | | |
| | 평가항목 | 세미나, 기업탐방 | 조사자료의 질 | 정보 및 리서치능력 | 중계 수수료 | 주문체결 능력 | 중개서비스 문제해결/기타 | 합계/ 순위 |
| | 항목가중치 | 30% | 10% | 30% | 5% | 15% | 10% | 100% |
| |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기준으로 S~C 등급은 각각 4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등급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S(각 11%), A(각 7%), B(각 6%), C(각 5%), D(각 3%)를 원칙으로 함 | | | | | | | |
| 채권 및 |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채권관련파생상품 | 평가항목 | 조사자료의 질 | 거래체결 능력 | 거래 용이성 | 시장판단 대처능력 | 기타서비스(성실성, 당사와의 관계) | 세미나 | 합계/ 순위 |
| | 배점 | 15% | 20% | 15% | 15% | 15% | 20% | 100% |

* 각 평가항목은 0~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합산기준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 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투자신탁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익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금전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 |
|----------------|--|
| 수익자총회 |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서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수익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